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9483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79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7904 판결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45,808,000원 및 그중 1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14,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69,05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8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임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0원 및 그중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6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8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주위적 항소취지 기재 돈1) 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2행부터 6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소송수계인인 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등을 협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 을 제15 내지 1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받지 못하면 원청인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이하 'E·F'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없고, E·F가 작업라인 가동을 멈춘 1일당 54억 7,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는 일부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B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E·F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② 원고와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동차 부품 단가를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B에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정산할 금액이

있었고, 서로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정하였다.

③ 원고는 C를 부당이득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9. 25. C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거나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 등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서 D이 공포를 느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법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강박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2,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의 G 등을 공갈하여 B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합계 24억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36).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

1)항소장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 3. 26.자 준비서면 제21면을 보면 '24.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위적 항소취지 기재 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정한다.